

의안 번호	2562	[울산광역시 중구 공공시설의 유희공간 개방 및 이용 조례안] 심사보고서
----------	------	---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6. 3. 20.(금) 안영호 의원 외 4명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6. 3. 20.(금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6. 4. 6.(월)

2. 제안설명 요지(안영호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울산광역시 중구가 설치·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유희공간을 주민에게 개방하여 주민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, 공공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 하기 위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(안 제1조~제2조)
-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개방 공간의 범위 등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(안 제5조~제6조)
- 통합예약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개인정보 보호 및 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- 사용신청 및 허가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- 사용허가의 우선순위, 제한, 취소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~제12조)
- 사용료 부과 및 감면에 관한 사항(안 제13조)

-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(안 제14조)
- 이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및 시설관리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
(안 제15조~제16조)
- 양도 및 전대의 금지에 관한 사항(안 제17조)

다. 근거법규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 및 제28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20조, 제22조 및 제24조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이명주)

가. 검토사항

1) 제정배경

- 울산광역시 중구가 설치·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유희공간을 주민에게 개방하여 주민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, 공공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 하기 위함.

2) 내용검토

가)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~제2조)

- 조례의 목적 명시
- 공공시설, 개방공간, 공공시설 관리자, 이용자에 대한 용어 정의

나) 다른 조례와의 관계(안 제3조)

- 공공시설의 사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조례안을 적용하는 것으로 각 부서에서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과 관련한 개별 조례와의 충돌 방지를 위해 필요한 규정이라고 판단됨.

다) 구청장의 책무(안 제4조)

- 구청장이 유휴공간을 발굴하여 개방하여 공정하고 효율적 운영체계를 마련하도록 함.

라) 개방공간의 범위 등(안 제5조)

- 공공시설 공간에 대한 목적 또는 용도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규정함.
- 행정 목적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경우 개방공간, 개방시간 변경가능함을 규정함.

마) 운영시간(안 제6조)

- 시설 특성, 보안 및 안전 관리, 인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설별 운영 기준으로 정하고 공개할 수 있음을 명시함.

바) 통합예약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(안 제7조)

- 관리의 효율화와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통합예약시스템 구축·운영 할 수 있고 시설 특성을 고려한 시설 운영 기준을 정할 수 있음.

사) 개인정보 보호 및 시스템 관리(안 제8조)

- 통합예약시스템 운영시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함을 명시
- 시스템 장애 및 정보유출 등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.

아) 사용신청 및 허가(안 제9조)

- 이용자가 사용 신청과 관련 통합예약시스템 또는 공공시설 관리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사용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.
- 공공시설 관리자가 신청 내용 검토하여 사용허가 여부 결정 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함.

자) 사용허가의 우선 순위(안 제10조)

- 안 제9조와 관련 다음 4가지 순서에 따라 사용허가 우선순위를 정함.

1. 구 또는 공공기관의 공공목적 행사
2. 주민자치·마을공동체 등의 공익적 활동
3. 비영리단체의 공익사업
4. 그 밖의 주민 모임 및 행사

차) 사용허가의 제한(안 제11조)

- 법령, 공공질서·미풍양속 위반, 정치·종교 및 영리 목적 등으로 유희공간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함.

카) 사용허가의 취소(안 제12조)

- 사용자가 부정한 사용신청, 신청 목적 외 사용 및 공공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타) 사용료 부과 및 감면(안 제13조)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53조에 따르면 “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” 라고 규정하고 있음.
- 「지방자치법」 제156조제1항 본문 규정을 보면 “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” 라고 규정하고 있음.

☞ 사용료와 관련된 사항은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음.

파) 안 제14조부터 안 제17조까지 규정은 사용료의 반환, 이용자의 손해배상 책임, 시설 관리자의 책임 등에 관한 규정임

나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중구가 설치·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유희공간을 주민에게 개방하여 주민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, 공공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 하기 위

한 것으로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“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.” 라고 규정하고 있음.

그리고,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 중 “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” 라고 규정하고 있음.

☞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 됨이 없고 제정가능한 것으로 판단됨.

- 본 조례 제정 지자체, 공공시설 예약시스템 운영 현황, 우리 구 활용 공공시설 예약시스템 현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,
- 전반적으로 제반 규정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위반 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- ※ 붙임 1. 조례 제정 지자체 현황
2. 공공시설 예약시스템 운영 현황
3. 우리구 활용 공공시설 예약시스템 현황

【참고】

① 조례 제정 지자체: 46개

- 광역 지자체: 7개(서울, 광주, 대전, 경기, 전남, 경북, 제주)
- 기초 지자체: 39개
- ※ 울산: 관련 조례 제정 사례 없음

② 공공시설 예약시스템 운영 현황

-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공공시설 통합예약시스템인 ‘공유누리’를 통해 부서별 공유자원 등록·관리 중임.
- 울산시는 2025년 12월 ‘울산모아 통합예약시스템’을 구축하여 2026년 1월부터 공공시설 및 강좌예약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, 점진적으로 구·군 공공시설 정보 연계 등록 예정임.

③ 우리구 활용 공공시설 예약시스템 운영 현황

구분	운영기관	예약시스템	내 용	비고
통합	행정안전부	공유누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공자원 개방·공유 서비스로 전국단위 공공 시설·공연·강좌 등 공공 자원 예약 가능 	
통합	울산광역시	울산모아 통합예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존 ‘울산광역시 공공시설예약시스템’(04. 4월 구축) 전면 개편 • 민간기관 정보 포함 	
개별	중구도시관리공단	중구체육시설예약서비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체육시설 예약 	
개별	일자리정책과	청년디딤터 누리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회의실·사무실 대관 	
개별	교육체육과	중구마을교육지원센터 누리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회의실·강의실 대관 	

근거법규

지방자치법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지방자치단체의 구역, 조직, 행정관리 등

가.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·위치 및 구역의 조정

나. 조례·규칙의 제정·개정·폐지 및 그 운영·관리

다. 산하(傘下) 행정기관의 조직관리

라.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·감독

마. 소속 공무원의 인사·후생복지 및 교육

바.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

사. 예산의 편성·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

아. 행정장비관리,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

자. 공유재산(公有財産) 관리

차. 주민등록 관리

카.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

2. 주민의 복지증진

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
나. 사회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

다.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

- 라. 노인·아동·장애인·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- 마.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·운영
- 바.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
- 사. 묘지·화장장(火葬場) 및 봉안당의 운영·관리
- 아.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
- 자. 청소,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
- 차.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
제20조(사용허가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(隨意)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.

1. 허가의 목적·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2.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

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·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·수익하게 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·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(原狀)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⑤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.

제22조(사용료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(料率)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. 다만,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. 다만,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.

④ 삭제

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하는 경우에 사용허가 기간 중의 사용료가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다.

제24조(사용료의 감면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1.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·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
2.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, 그 상속인,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
3.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
4.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.